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194 호 2019. 9. 11.(수)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99호[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0호[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1호[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2호[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3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1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4호[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5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20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00호[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2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01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29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1013호[울산광역시 북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	30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ox
인 기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회	\neg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중 전 (인)

2019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99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 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을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별표 1]

물품의 품종 · 상태 구분

ㅇ물품의 종류

- (1) 비 품: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소 모 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ㅇ품종구분 기준

-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 ③ 기타 구청장이 지정한 물품
- (2) 소 모 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재료 등)
-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④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물품상태 분류기준

-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3조와 용어가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물품관리공무원 직명 일치(제2조제2항, 제4항)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소모품 취득단가 변경(별표 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중 전 (인)

2019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0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이하 "예술 창작소"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금나루 2014: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염포동)
- 2. 감성갱도 2020: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4길 18(신천동)

부 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북구 예술 창작소 추가 조성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 창작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북구 예술 창작소 추가 설치로 인한 명칭 등 조문 수정(제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중 전 (인)

2019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무용,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건전한 예술행위를 말한다.
-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장소(Busking Zone)로 제공할 수 있고, 공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 책무)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거리공연가는 관람객의 편의와 공연장소의 환경 정비 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문화 진흥과 공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
 -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 금지 사항
 - 2.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자 준수 사항
 - 3. 그 밖에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거리공연가들과 구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및 상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구청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 규정(제3조 ~ 제4조)
-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규정(제5조, 제7조)
- 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중 전 (인)

2019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여성건강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9조의2 신설
 -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 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중 전 (인)

2019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한 관내 체류 재외동포
- 3. 「출입국 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관내 체류 외국인
-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사고 또는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산정) 보험기관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1. 대상자가 사고 또는 재난 발생일 현재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

공

1. 제정이유

○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또는 재난 등으로부터 구민 피해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구민 생활 및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제1조 ~ 제2조)
- 나. 생활안전보험 피보험자 규정(제4조)
- 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률 납입에 관한 사항(제5조 ~ 제6조)
- 라. 보험금액 산정(제8조)
- 마.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제9조 ~ 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 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중 전 (인)

2019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4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4.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화기
 - 2. 단독경보형감지기
 - ③ 제2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별지 제1호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성	명	삳]년월일			세디	개원수	
지 원	주	소			전화 ¹ (휴다				
대 상 자	대 상	상 자 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 <i>₹</i>	□ 한부모기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독거 노인□ 기 타			담 확	당공무원 인 란
지원	<u>l</u> 시	설 명	소화기	개 /	단독경	보형김	コフ		개
. –	.희망	· ·	H 그 의 제시 카의시 - 1 - 1	년	월		일	را ال	7 -1101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위와 같이 소방시설					에 반한	소네안」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돈는 인)	
Ę	을산광) 역시] 북구청장 귀하						

1.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류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

공

1. 제정이유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제4조)
- 라. 지원 신청 등(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중 전 (인)

2019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법률 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 (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관련하여 입법사항의 자문
 -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① 고문은 지방의회와 관련된 입법·법률 분야의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울산광역시 관내 소재하는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 ② 고문 중 변호사는 울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 ③ 의장이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6조(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정리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부 칙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을 승낙합니다.

주 소 소 속 성 명 (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소 속 성 명

귀하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종 류	제	명	의 뢰 연월일	의 뢰 내 용	회 신 연월일	회 신 내 용	비고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

공

1. 제정이유

○ 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각종 안건심의나 자치 법규 제·개정 등 법령해석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회 입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직무의 규정(제2조)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제3조)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임기에 관한 사항(제5조)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수당(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00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1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의회 의결일자 : 2019. 9. 9.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_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72,281,719	100.00%	355,585,042	100.00%	16,696,677	4.70%	
일반회계			368,682,775	99.03%	352,008,098	98.99%	16,674,677	4.74%	
특	특별회계		3,598,944	0.97%	3,576,944	1.01%	22,000	0.62%	
	기타특별회계		3,598,944	0.97%	3,576,944	1.01%	22,000	0.62%	
	의료급여기	금특별회계	197,348	0.05%	189,348	0.05%	8,000	4.2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5,700	0.01%	55,700	0.02%	0	0.00%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837,770	0.23%	837,770	0.24%	0	0.00%	
	주차장특별호	์ ปิ๊ฦ	2,508,126	0.67%	2,494,126	0.70%	14,000	0.56%	

공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68,682,775	100.00 %	352,008,098	100.00 %	16,674,677	4.74%
100 지방세수입	70,663,000	19.17 %	70,463,000	20.02 %	200,000	0.28%
110 지방세	70,663,000	19.17 %	70,463,000	20.02 %	200,000	0.28%
200 세외수입	21,487,644	5.83 %	20,367,564	5.79 %	1,120,080	5.50%
210 경상적세외수입	17,224,422	4.67 %	17,243,784	4.90 %	△19,362	△0.11%
220 임시적세외수입	4,263,222	1.16 %	3,123,780	0.89 %	1,139,442	36.48%
300 지방교부세	8,585,392	2.33 %	6,702,391	1.90 %	1,883,001	28.09%
310 지방교부세	8,585,392	2.33 %	6,702,391	1.90 %	1,883,001	28.09%
400 조정교부금등	53,229,280	14.44 %	47,129,280	13.39 %	6,100,000	12.94%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3,229,280	14.44 %	47,129,280	13.39 %	6,100,000	12.94%
500 보조금	194,795,485	52.84 %	187,450,558	53.25 %	7,344,927	3.92%
510 국고보조금등	128,088,486	34.74 %	122,849,946	34.90 %	5,238,540	4.26%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66,706,999	18.09 %	64,600,612	18.35 %	2,106,387	3.26%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921,974	5.40 %	19,895,305	5.65 %	26,669	0.13%
710 보전수입등	19,337,132	5.24 %	19,310,463	5.49 %	26,669	0.14%
720 내부거래	584,842	0.16 %	584,842	0.17 %	0	0.00%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68,682,775	100.00 %	352,008,098	100.00 %	16,674,677	4.74 %
010	일반공공행정	18,923,513	5.13 %	18,643,747	5.30 %	279,766	1.50 %
020	공공질서및안전	2,376,939	0.64 %	1,953,472	0.55 %	423,467	21.68 %
050	교육	1,967,960	0.53 %	1,909,670	0.54 %	58,290	3.05 %
060	문화및관광	23,566,921	6.39 %	22,507,634	6.39 %	1,059,287	4.71 %
070	환경보호	11,436,171	3.10 %	11,496,336	3.27 %	△60,165	△0.52 %
080	사회복지	189,300,752	51.35 %	179,740,452	51.06 %	9,560,300	5.32 %
090	보건	9,552,019	2.59 %	9,381,852	2.67 %	170,167	1.81 %
100	농림해양수산	20,347,624	5.52 %	20,023,189	5.69 %	324,435	1.62 %
110	산업・중소기업	3,911,080	1.06 %	1,791,548	0.51 %	2,119,532	118.31 %
120	수송및교통	11,744,569	3.19 %	9,131,569	2.59 %	2,613,000	28.62 %
140	국토및지역개발	20,175,790	5.47 %	18,867,073	5.36 %	1,308,717	6.94 %
160	예비비	1,477,935	0.40 %	2,549,918	0.72 %	△1,071,983	△42.04 %
900	기타	53,901,502	14.62 %	54,011,638	15.34 %	△110,136	△0.2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201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하천의 명칭
양정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교통행정과)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3. 점용 목적 및 개요 토지의 점용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양정동 776-33번지

나. 면적 : 413 m²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19. 09. 16. ~ 2023.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 1013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 그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내역

(단위:m²)

	Ι										
,	행정구역	축종별 거리제한 지역									
구분	면적	합계		기축시육제한	100m미만	100m이상 250m미만	250m이상 500m미만	500m이상 800m미만	800m이상 100m미만		
합계	157,467,557	123,679	9,082	32,034,286	17,355,995	20,580,650	24,354,417	19,797,933	9,555,801		
		기정	5,290,908	137,834	712,428	1,103,426	1,577,332	1,222,656	537,232		
가대동	5,933,338	정정	5,290,954	137,817	712,373	1,103,518	1,577,337	1,222,668	537,241		
		증감	증)46	감)17	감)55	증)92	증)5	증)12	증)9		
구유동	2,513,244	2,4	198,923	224,569	245,486	312,629	652,432	669,994	393,813		
		기정	6,882,863	1,302,367	969,513	1,143,922	1,220,371	1,344,916	901,775		
달천동	7,917,838	정정	6,880,572	1,239,021	1,029,449	1,145,151	1,219,963	1,344,397	902,591		
		증감	감)2,291	감)63,346	증)59,936	증)1,229	감)408	감)519	증)816		
당사동	3,278,387	3,006,597		191,628	313,302	530,378	677,112	868,950	425,227		
대안동	16,201,176	7,673,391		549,970	632,131	1,057,911	2,007,201	2,116,260	1,309,918		

매곡동	6,243,593	5,6	598,572	2,244,951	552,172	595,042	840,559	992,615	473,233
명촌동	3,617,230	3,617,230		2,397,131	523,277	453,135	243,687	-	-
무룡동	8,851,711	4,6	525,772	284,072	781,217	1,073,338	1,177,040	879,700	430,405
산하동	6,447,388	5,4	192,080	1,598,883	699,204	746,305	815,898	1,067,032	564,758
		기정	5,826,188	636,509	920,166	1,349,579	1,610,000	1,211,715	98,219
상안동	5,826,033	정정	5,826,033	637,452	918,205	1,350,731	1,610,225	1,211,196	98,224
		증감	감)155	증)943	감)1,961	증)1,152	증)225	감)519	증)5
송정동	4,499,929	3,8	380,381	1,030,845	593,261	836,906	811,166	395,614	212,589
		기정	4,437,678	384,159	564,984	1,027,321	1,574,847	837,320	49,047
시례동	4,437,724	정정	4,437,724	260,579	555,623	1,001,434	1,709,895	861,136	49,057
		증감	증)46	감)123,580	감)9,361	감)25,887	증)135,048	증)23,816	증)10
신명동	2,029,461	2,0	019,061	84,963	260,425	333,805	543,689	647,441	148,738
신천동	2,148,841	2,1	148,841	1,253,427	371,305	353,096	171,013	-	-
신현동	8,133,052	5,5	546,167	152,476	751,801	1,284,652	1,746,560	1,066,414	544,264
양정동	6,663,662	4,9	991,539	2,567,439	337,097	448,266	654,359	621,822	362,556
어물동	11,901,668	5,6	530,093	169,556	649,261	1,043,593	1,691,883	1,331,265	744,535
연암동	6,559,250	4,5	559,964	2,076,326	720,295	350,899	440,120	554,580	417,744
염포동	5,688,011	4,9	994,654	1,674,560	572,944	688,234	815,802	775,162	467,952
정자동	1,428,760	1,4	128,760	250,729	280,921	388,894	302,452	205,764	-
중산동	8,658,313	8,0	007,290	3,282,448	1,391,945	1,289,510	947,435	705,827	390,125
진장동	2,356,786	2,3	356,786	1,867,787	423,078	65,921	-	-	-
창평동	5,587,813	4,6	611,037	377,207	1,446,751	1,149,920	807,575	549,671	279,913
		기정	6,985,120	1,930,869	1,474,157	1,796,220	1,425,563	358,311	-
천곡동	6,985,194	정정	6,985,194	1,797,658	1,509,203	1,787,144	1,493,568	397,621	-
		증감	증)74	감)133,211	증)35,046	감)9,076	증)68,005	증)39,310	-
호계동	3,549,051	3,324,215		1,815,396	258,313	317,242	326,965	362,609	243,690
화봉동	6,273,927	4,6	601,683	1,657,930	512,860	607,380	736,392	670,769	416,352
효문동	3,736,177	3,5	545,569	2,209,466	314,096	265,616	334,089	279,426	142,876
		•				-			

-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 5,000분의 1 지형도(게재 생략)
- 3. 지형도면 열람 및 주민의견 제출

가. 기간 : 2019. 9. 11. ~ 2019. 9. 30.(20일간)

- 나.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052-241-7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